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448호 2019. 7. 1(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8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2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지구 단위계획) 경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43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4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10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현로 6-56 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6.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6-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73-4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6-56 (마전동)	2008123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4-1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40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4-13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42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05-22, 105-24, 105-25, 105-26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93 (왕길동)	20090922	사월이라 불리던 자연부락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05-21, 105-6, 105-23, 105-27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95 (왕길동)	20090922	사월이라 불리던 자연부락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05-4, 105-5, 105-20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97 (왕길동)	20090922	사월이라 불리던 자연부락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94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62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신85-36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42번길 83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08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92번길 14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9-1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59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9-2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59-1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8-31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88번길 7-1 (석남동)	20090710	길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9-11, 130-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5번길 47 (마전동)	20081231	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36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27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103번길 5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4-11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0-14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7-2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60번길 27 (청라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5-4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482번길 32 (청라동)	20190429	파랑로 시작지점에서 4,820m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9-06-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석남동 642-23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90번길 17 (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45번길 31 (석남동)	소유자신청	20151113	북항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1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325-3 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6.2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6-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8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25-3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8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25-5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8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25-4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98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54-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81-1	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 221 (대곡동)	20130730	도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9-1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42번길 55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74-1	인천광역시 서구 신동길 47-1 (금곡동)	20090922	신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8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74-4	인천광역시 서구 신동길 49 (금곡동)	20090922	신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9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7-4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2길 26 (금곡동)	20081231	완정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3-29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23 (가좌동)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0-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41-1 (원창동)	20090922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6-1, 956-5, 956-6, 956-7, 956-8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16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9, 958-10, 958-60, 958-66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2-18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29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89번길 49-1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4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2번길 37 (원창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고시일 : 2019-06-24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17-4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23-1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마전1동마을회관
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23-3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23-2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27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공가
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27-1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23-12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23-10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23-14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17-12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 49 (마전동)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착공	20081231	검단로6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6 (가좌동)	신축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급진목재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1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1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대광이엔씨 (대표 조영훈), (주)대광건영 (대표 조영훈, 김남중)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1블록
  - 나. 대지면적 : 42,974㎡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18,001.1932㎡ (지하2층, 지상20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735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238,808,308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14. ~ 2022. 06. 30.

## 5. 변경사항

가. 사업주체 변경(대광이엔씨→대광이엔씨, 대광건영)

나. 시공사 변경(대광건영→대광건영, 로제비앙건설)

다. 사업기간 변경(2019.03.08.~2021.11.30.→2019.10.14.~2022.06.30.)

라. 단위세대 변경(발코니 크기, 침실크기, 주방 및 드레스룸 창호 등)

- 연면적 변경  $117,523.6841\text{m}^2 \rightarrow 118,001.1932\text{m}^2$

마. 지하 기계실, 저수조 및 전기실 높이 변경

바. 부대복리시설 변경(관리사무소 단열재 및 높이, 어린이집 및 경로당 지붕, 근린생활시설 계단·중층 피트 추가·창호 변경·단열재 및 높이, 경비실 기초 등)

사. 조경 및 어린이 놀이터 변경 등

##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18호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감사,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2.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3.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해당 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가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등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2.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3. 기타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4.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3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실·단·과·소장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실무협의회는 중앙 실무협의회와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두되, 중앙 실무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이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⑤ 중앙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43개)

지 역	지 방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서울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강남구	17개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3개
경기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화성시	8개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3개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3개
충남	논산시, 당진시, 아산시	3개
전남	담양군, 여수시, 해남군	3개
전북	완주군, 전주시, 부안군	3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1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한들로 64-35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7.0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7-0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1-199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64-35 (백석동)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72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10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69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6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73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9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71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7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8-8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12 (가좌동)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3-3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17 (청라동)	20110630	크리스탈로 시작점부터 약 74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	
8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80-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13번길 28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3,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고시일 : 2019-07-01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63-4 (원창동)	건물 말소	20090922	원창동의 동명을 따 원창동은 조선시대에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해안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임	
2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28번길 57 (가좌동)	건물 말소	20090922	신진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	삼신목재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12 (가좌동)	건물 말소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42-4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	
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42-6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2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디케이퍼스트 (대표자 이성헌)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 나. 대지면적 : 73,250㎡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15,189.119㎡ (지하2층, 지상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500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598,916,469천원
4. 사업기간 : 2020. 10. 31. ~ 2023. 05.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 - 122호

## 인천도시관리계획(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7. 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오류동 1573-4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	-	1,145,026	-	1,145,026	
	1-A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88,147.8	-	488,147.8	북측
	1-B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56,878.2	-	656,878.2	남측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있음)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계		1,145,026	-	1,145,026	100.0%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713,816.5	-	713,816.5	62.4%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56,832.0	-	256,832.0	22.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4,377.5	-	174,377.5	15.2%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변경없음)

##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 m, ㎡)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변경	31	13,284	278,162.6	18	6,285	156,545.1	3	1,320	39,733.0	10	5,679	81,884.5
일반도로	소계	21	9,634	257,622.4	13	5,907	152,758.1	3	1,320	39,733.0	5	2,407	65,131.3
	대로	10	5,561	167,934.7	3	1,926	64,841.8	2	1,228	37,961.6	5	2,407	65,131.3
	중로	11	4,073	89,687.7	10	3,981	87,916.3	1	92	1,771.4	-	-	-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6	447	4,196.0	5	378	3,787.0	-	-	-	1	69	409.0
	소로	6	447	4,196.0	5	378	3,787.0	-	-	-	1	69	409.0
자전거전용도로	소계	4	3,203	16,344.2	-	-	-	-	-	-	4	3,203	16,344.2
	소로	4	3,203	16,344.2	-	-	-	-	-	-	4	3,203	16,344.2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대로	1	1	35	보조 간선	1,230	대2-1	대2-2	일반도로		국토해양부 고시 2010-218 (2010.04.16)	
-	대로	1	2	35	보조 간선	259	중1-141	대3-3	일반도로		"	
-	대로	1	3	35	보조 간선	437	중1-141	대3-3	일반도로		"	
-	대로	2	1	32	보조 간선	891	대2-2	대1-1	일반도로		"	
-	대로	2	2	30	보조 간선	337	대2-1	대1-1	일반도로		"	
-	대로	3	1	26	집산 도로	150	남측물류단지 상부경계	대1-1	일반도로		"	
-	대로	3	2	26	집산 도로	139	중1-5	대1-1	일반도로		"	
-	대로	3	3	26	집산 도로	539	대1-2	대1-3	일반도로		"	
-	대로	3	4	26	집산 도로	486	대1-2	대1-3	일반도로		"	
-	대로	3	5	26	집산 도로	1,093	대1-3	대1-3	일반도로		"	
-	중로	1	1	21	집산 도로	398	대1-1	중1-2	일반도로		"	
-	중로	1	2	21	집산 도로	295	대2-1	대1-1	일반도로		"	
-	중로	1	3	21	집산 도로	341	중1-2	대1-1	일반도로		"	
-	중로	1	4	21	집산 도로	136	중1-5	중1-5	일반도로		"	
-	중로	1	5	21	집산 도로	397	남측물류단지 상부경계	대1-1	일반도로		"	
-	중로	1	6	21	집산 도로	392	중1-7	대1-1	일반도로		"	
-	중로	1	7	21	집산 도로	647	중1-9	대1-1	일반도로		"	
-	중로	1	8	21	집산 도로	171	중1-9	중1-7	일반도로		"	
-	중로	1	9	21	집산 도로	650	대2-2	중1-7	일반도로		"	
-	중로	1	10	21	집산 도로	554	대1-2	대1-2	일반도로		"	
-	중로	2	1	18	집산 도로	92	북측물류단지 하부경계	대3-5	일반도로		"	단지 밖 폭1m
-	소로	1	1	10	특수 도로	23	1호공공공지	중1-6	보행자전용도로		"	
-	소로	1	2	10	특수 도로	74	중1-7	1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	소로	1	3	10	특수 도로	111	대3-3	대3-4	보행자전용도로		"	
-	소로	1	4	10	특수 도로	90	중1-10	중1-10 3호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	
-	소로	1	5	10	특수 도로	80	중1-10	10호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	
-	소로	3	1	6	특수 도로	69	중1-4	중1-5	보행자전용도로		"	
-	소로	3	2	5	특수 도로	1,090	1호완충녹지	대2-2	자전거전용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소로	3	3	5	특수 도로	985	대2-1	중1-7	자전거전용도로			
-	소로	3	4	5	특수 도로	1,118	중2-1	북측물류단지 동측경계부	자전거전용도로			
-	소로	3	5	5	특수 도로	10	대2-49	소3-3	자전거전용도로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8,310.5	-	8,310.5	
	1	노외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842.9	-	1,842.9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2	노외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6.0	-	1,706.0	”	
	3	노외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761.6	-	4,761.6	”	

■ 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68,751.7	-	68,751.7	
-	2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072.4	-	6,072.4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3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020.9	-	6,020.9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4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451.4	-	3,451.4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5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907.1	-	6,907.1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6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123.8	-	6,123.8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7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594.8	-	3,594.8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8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76.3	-	3,976.3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9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140.4	-	2,140.4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10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562.3	-	2,562.3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11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9,611.3	-	9,611.3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12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8,291.0	-	18,291.0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33,390.0	-	33,390.0		
-	1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13,213.5	-	13,213.5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2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20,176.5	-	20,176.5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5,665.8	-	25,665.8		
-	1	1호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040.4	-	4,040.4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2	2호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1,625.4	-	21,625.4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739.7	-	4,739.7		
-	1	오수중계펌프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61.7	-	4,161.7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2	오수중계펌프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578.0	-	578.0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있음)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있음)

## ■ 물류단지시설용지(변경있음)

[변경 전]

구분	도 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물 류 단 지 시 설	T1	T1-1	42,756.8	1	21,336.8	물류터미널
				2	21,420.0	물류터미널
		T1-3	67,923.4	1	16,725.7	물류터미널
				2	21,421.3	물류터미널
				3	14,456.4	물류터미널
				4	7,659.7	물류터미널
	5			7,660.3	물류터미널	
	T2	T2-1	44,593.3	1	25,510.6	집배송시설
				2	19,082.7	집배송시설
		T2-2	26,367.3	1	13,159.7	집배송시설
				2	13,207.6	집배송시설
		T2-3	65,186.1	1	9,841.7	집배송시설
				2	9,842.6	집배송시설
				3	9,844.5	집배송시설
				4	12,246.4	집배송시설
				5	12,006.8	집배송시설
				6	11,404.1	집배송시설
	T3	T3-1	90,561.1	1	29,939.8	창고시설
				2	30,420.8	창고시설
				3	30,200.5	창고시설
		T3-2	40,154.7	1	13,410.9	창고시설
				2	13,410.9	창고시설
				3	13,332.9	창고시설
		T3-3	33,659.4	1	11,141.9	창고시설
				2	11,308.0	창고시설
				3	11,209.5	창고시설
		T3-4	8,184.7	1	8,184.7	창고시설
	T3-5	8,197.4	1	8,197.4	창고시설	
	T4	T4	71,226.8	1	25,115.9	컨테이너 장치장
				2	23,418.0	컨테이너 장치장
3				22,692.9	컨테이너 장치장	
상류시설	G	G1	10,510.7	1	5,240.6	전문상가단지등
				2	5,270.1	전문상가단지등

[변경 후]

구분	도 면 번 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물 류 시 설	T1	T1-1	42,756.8	1	21,336.8	물류터미널	
				2	21,420.0	물류터미널	
		T1-3	67,923.4	1	16,725.7	물류터미널	
				2	21,421.3	물류터미널	
				3	14,456.4	물류터미널	
				4	7,659.7	물류터미널	
				5	7,660.3	물류터미널	
		T2	T2-1	44,593.3	1	25,510.6	집배송시설
					2	19,082.7	집배송시설
			T2-2	26,367.3	1	13,159.7	집배송시설
	2-1				4,285	집배송시설	
	2-2				3,302.6	집배송시설	
	2-3				1,653	집배송시설	
	2-4				1,653	집배송시설	
	2-5				2,314	집배송시설	
	T2-3		65,186.1	1	9,841.7	집배송시설	
				2	9,842.6	집배송시설	
				3	9,844.5	집배송시설	
				4-1	8,939.8	집배송시설	
				4-2	8,939.8	집배송시설	
				5	12,006.8	집배송시설	
	T3		T3-1	90,561.1	1	29,939.8	창고시설
					2	30,420.8	창고시설
					3	30,200.5	창고시설
			T3-2	40,154.7	1	13,410.9	창고시설
		2			13,410.9	창고시설	
		3			13,332.9	창고시설	
		T3-3	33,659.4	1	11,141.9	창고시설	
				2	11,308.0	창고시설	
				3	11,209.5	창고시설	
		T3-4	8,184.7	1	8,184.7	창고시설	
		T3-5	8,197.4	1	8,197.4	창고시설	
		T4	T4	71,226.8	1	25,115.9	컨테이너 장치장
2					23,418.0	컨테이너 장치장	
3					22,692.9	컨테이너 장치장	
상류시설	G	G1	10,510.7	1	5,240.6	전문상가단지등	
				2	5,270.1	전문상가단지등	

##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T2-2	2 → 2-1,2-2,2-3,2-4,2-5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T2-3	4 → 4-1,4-2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	P	P1	18,947.1	1	2,983.2	가공 및 제조시설	
				2	3,074.7	가공 및 제조시설	
				3	2,953.9	가공 및 제조시설	
				4	3,832.1	가공 및 제조시설	
				5	3,104.0	가공 및 제조시설	
				6	2,999.2	가공 및 제조시설	
		P2	9,320.9	1	5,254.2	가공 및 제조시설	
				2	4,066.7	가공 및 제조시설	
		P3	8,596.7	1	4,235.1	가공 및 제조시설	
				2	4,361.6	가공 및 제조시설	
		P4	6,385.1	1	3,191.3	가공 및 제조시설	
				2	3,193.8	가공 및 제조시설	
		P5	32,673.2	1	5,649.0	가공 및 제조시설	
				2	4,431.3	가공 및 제조시설	
				3	5,742.8	가공 및 제조시설	
				4	5,408.2	가공 및 제조시설	
				5	5,767.3	가공 및 제조시설	
				6	5,674.6	가공 및 제조시설	
		P6	33,842.6	1	6,341.0	가공 및 제조시설	
				2	6,384.6	가공 및 제조시설	
				3	6,372.5	가공 및 제조시설	
				4	6,406.9	가공 및 제조시설	
				5	8,337.6	가공 및 제조시설	
		P7	20,849.1	1	3,151.8	가공 및 제조시설	
				2	3,174.2	가공 및 제조시설	
				3	3,151.6	가공 및 제조시설	
				4	3,174.0	가공 및 제조시설	
				5	1,989.8	가공 및 제조시설	
				6	2,089.8	가공 및 제조시설	
				7	2,107.5	가공 및 제조시설	
				8	2,010.4	가공 및 제조시설	
		P8	13,665.0	1	6,832.0	가공 및 제조시설	
				2	6,833.0	가공 및 제조시설	
		S	S1	7,727.5	1	1,942.8	판매 및 업무시설
					2	2,395.6	판매 및 업무시설
					3	1,725.4	판매 및 업무시설
					4	1,663.7	판매 및 업무시설
			S2	6,957.5	1	3,478.6	판매 및 업무시설
					2	3,478.9	판매 및 업무시설
			S3	6,910.2	1	3,201.3	판매 및 업무시설
2	3,708.9				판매 및 업무시설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 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지원시설	N	N1	1,618.4	1	530.3	근린생활시설	
				2	558.8	근린생활시설	
				3	529.3	근린생활시설	
		N2	1,619.9	1	530.4	근린생활시설	
				2	559.3	근린생활시설	
				3	530.2	근린생활시설	
		N3	1,880.9	1	470.1	근린생활시설	
				2	470.3	근린생활시설	
				3	470.3	근린생활시설	
				4	470.2	근린생활시설	
		N4	2,847.4	1	750.8	근린생활시설	
				2	698.6	근린생활시설	
				3	698.8	근린생활시설	
				4	699.2	근린생활시설	
		N5	2,748.1	1	698.9	근린생활시설	
				2	698.9	근린생활시설	
				3	699.1	근린생활시설	
				4	651.2	근린생활시설	
		V	V1	6,072.4	1	6,072.4	차량지원시설
		M	M1	34,022.0	1	34,022.0	복합시설
주	주1	1,842.9	1	1,842.9	주차장		
	주2	1,706.0	1	1,706.0	주차장		
	주3	4,761.6	1	4,761.6	주차장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 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공공시설	오	오1	4,161.7	1	4,161.7	오수중계펌프장
		오2	578.0	1	578.0	오수중계펌프장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물류단지시설 용지

■ 물류터미널(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물 류 터미널 (T1)	T1-1  T1-3	용 도	권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물류터미널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물류터미널</li> <li>•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시설</li> <li>•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에 의한 창고</li>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li>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li> <li>•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속용도</li> </ul>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 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li> <li>•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li> </ul>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li> <li>- 20~30m집산도로 : 3m 이격</li> </ul> </li> </ul>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집배송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집배송 시설 (T2)	T2-1 T2-2 T2-3	용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li>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li> </ul>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에 의한 창고</li>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li>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li> <li>•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속용도</li> </ul>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30m 이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li> <li>•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li> <li>- 20~30m집산도로 : 3m 이격</li> </ul> </li> </ul>					
		색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참고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참고 시설 (T3)	T3-1 T3-2 T3-3 T3-4 T3-5	용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참고</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참고</li> </ul>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참고</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참고</li>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li>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li> <li>•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속용도</li> </ul>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30m 이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li> <li>•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li> <li>- 20~30m집산도로 : 3m 이격</li> </ul> </li> </ul>					
		색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컨테이너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컨테이너 시설 (T4)	T4	용도	권장	•물류단지 개발지침 별표2의 컨테이너시설용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단지 개발지침 별표2의 컨테이너시설용지</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창고</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라목에 의한 집배송시설</li> <li>•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에 의한 부속용도</li> </ul>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30m 이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li> <li>•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li> <li>- 20~30m집산도로 : 3m 이격</li> </ul> </li> </ul>					
		색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상류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류 시설 (G)	G	용도	권장	-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전문상가단지</li> <li>•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li> <li>•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li> <li>•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li> <li>•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에 의한 자동차경매장</li> </ul>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높 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별표1]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자인 적용</li> <li>•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li> <li>•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태의 다층기단 설치 권장</li> </ul>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li> <li>-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li> <li>- 20~30m 집산도로 : 3m 이격</li> </ul>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2-8	10RP-7.5R	

(2) 지원시설 용지

■ 가공 및 제조(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공 및 제조 (P)	P1 P2 P3 P4 P5 P6 P7 P8	용도	권장	-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공장 및 동법 제2조 제13호의 아파트형 공장</li> <li>•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가공품 생산공장</li> <li>•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제외)</li> <li>•부수용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li> </ul>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30m 이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li> <li>•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li> <li>- 35m주간선도로 : 6m</li> <li>- 20~30m집산도로 : 3m</li> </ul>				
		색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판매 및 업무(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판매 및 업무 (S)	S1 S2 S3	용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li> <li>-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ul>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li> <li>-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게임장, 총포 판매사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li> <li>- 판매시설</li> <li>-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운동시설</li> <li>-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li> <li>-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li> </ul>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높 이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별표1]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자인 적용</li> <li>•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li> <li>•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태의 다층기단 설치권장</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li> <li>-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li> <li>- 20~30m집산도로 : 3m 이격</li> </ul>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2-8	10RP-7.5R	

■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N)	N1 N2 N3 N4 N5	용 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li> </ul> </li> </ul>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li> <li>- 의료시설 중 가목</li> <li>-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li> <li>- 운동시설 중 가목</li> <li>-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li> </ul> </li> </ul>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 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자인 적용</li> <li>•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li> <li>•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태의 다층기단 설치권장</li> </ul>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li> <li>- 20~30m 집산도로 : 3m 이격</li> </ul>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2-8	10RP-7.5R			

■ 차량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 지원 시설 (V)	V1	용 도	권장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한함)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단,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마목 매매장 및 사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 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					
		배 치	•건축한계선 - 35m주간선도로 : 6m - 20~30m집산도로 : 3m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복합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시설 (M)	M1	용 도	권장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마목 매매장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사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 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30m이하				
		형 태	-					
		배 치	•건축한계선 - 35m주간선도로 : 6m - 20~30m집산도로 : 3m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주1 주2 주3	용도	권장	-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외주차장</li> <li>-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li> <li>※부속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과 복합건축가능 (단, 건축연면적의 30%이내 허용)</li> </ul>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60% 이하
			높이	•7층 이하
		배치	-	
		색채	-	

### (3) 공공시설 용지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오수 중계 펌프장	오1 오2	용도	권장	-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30m 이하
		배치	-	
		색채	-	

별표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기준

$$H = ( W + L / 2 ) \time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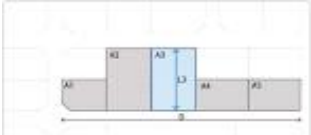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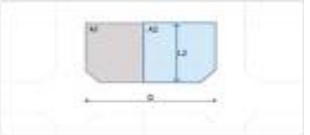
▷ H : 건축물의 높이

▷ W : 대지가 접한 전면(前面)도로의 너비

- 대상대지가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
  -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
-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의 너비를 전면도로로 정함
- 폭이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 = 대상대지의 전면도로 면적/대지와 접한 전면도로 길이

▷ L : 가로구역 내 당해 대지 기준 좌우 2필지씩 합계 5필지 내 평균 중심(縱深) 길이

- 주변 필지와 조화를 위해 대상대지와 같은 전면도로에 접한 좌우 필지의 깊이 반영

같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①	같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②	코너필지의 경우
		
대상지의 대지깊이 = 대지(필지) 면적의 합 = (A1+A2+A3+A4+A5)/D	대상지의 대지깊이 = 대지(필지) 면적의 합 = (A1+A2+A3)/D	대상지의 대지깊이 = 대지(필지) 면적의 합 = (A1+A2)/D

▷ A : 대지가 접한 전면(前面)도로의 너비별 높이계수

용도지역	전면도로의 너비별 높이계수(A)		
	4M 이하	6M 이하	6M 초과
전용/일반주거지역	1.8		1.5
준주거지역	2.0	1.8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23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3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당하동 검단신도시 AA3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미래도이엔씨(주)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3블록
  - 나. 대지면적 : 40,736㎡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11,860.1466㎡ (지하 2층, 지상 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6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269,47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9. 8. 30. ~ 2022. 6.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1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市 법무담당관-5445(2019.4.24.) 자치법규안 심사결과 정비안 중 일부 수정요망에 따른 제4조(부적당한 장소) 및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내용 단서 조항 추가 및 삭제 (안 제3조)
- 부적당한 장소 내용 추가(안 제4조제1항 제1호)

###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경제에너지과, 전화 032-560-4465, Fax 032-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④ (생략)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3. (생략)

②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  
-----  
-----  
-----.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